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
----------	----

제출일자 : 1998. 11. 2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기금의 조성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재원을 삭제하고, 용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완화시켜 저소득층 주민들이 편리하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재원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 삭제

나. 용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의 거주지 자격을 우리구에 거주하는 세대주에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완화 (안 제6조 제2항).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3조

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2항중 “우리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2인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 한 자금 3.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 <u>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u> 	<p>제2조(기금의 조성) ----- ----- 1. ----- ----- 2. ----- ----- (삭 제)</p>
<p>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 신청자” 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대부신청서는 <u>우리구에 거주 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야 한다.</u></p>	<p>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 ----- ----- -----</p> <p>②----- 부산광역시에 거주 하는 2인의 ----- -----</p>